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85호로 2022년 6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의 법인화 변경 완료에 따라 변경된 단체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나. 법인명 반영 및 정관상 명칭으로 수정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다. 장학생 선정 후 통보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4조,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4.14.~5.4./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의 변경된 단체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장학생 선정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신설함.
- 그 밖에 조문은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임.

○ 검토 결과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법령상 기준액이 없는 경우, 과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